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정립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 STUDY ON NEEDS FOR FORMUL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STANDARDS IN COMPLIANCE WITH WEB ACCESSIBILITY REQUIREMENT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AND STATUTORY LIABILITIES THEREFROM

장 혜 진\*\*  
Jang, Hye-Jin

#### 목 차

- I. 서론
- II.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 조항에 대한 검토
- III.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IV. 결론

#### 국문초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항공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문접수일 : 2014.06.18

심사완료일 : 2014.08.04

게재확정일 : 2014.08.05

\* 이 논문은 2014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변호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 접근성의 의미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만을 놓고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웹 접근성에 관하여는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내에는 그 기준 중에서 어떠한 것을 따르면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구현은 물론,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 내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준 선택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고, 웹을 운영하여야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범자들은 자신들이 보장하여야 하는 웹 접근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요구하면서 각각 다른 그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능성이 없고, 법적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지금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단순히 웹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각종 형사·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러한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명확한 규정 정립을 통해서만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구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거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더욱 용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장애, 장애인차별, 웹 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구제, 손해배상

##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07. 4. 10. 법률 제8341호<sup>1)</sup>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8. 4. 11.부터 시행<sup>2)</sup>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에 따라 법 적용시기가 달라지도록 규정<sup>3)</sup>되어 있는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2015.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부 문화·예술사업자 및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sup>4)</sup> 및 제2호<sup>5)</sup>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임을 이유로 “정보접근에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중략)...당해 행위자 등<sup>6)</sup>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

1) 이하에서는, 현행 법령 등을 언급할 때에는 별도의 법령 번호를 붙이지 아니하나, 개정 전의 법령 등을 언급할 때에는 별도의 법령 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함.

2) 법률 제8341호 부칙 제1항 참조

3) 법률 제8341호 부칙 제1항 참조

4)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5)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난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sup>7)</sup>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실제 2013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내지는 정보통신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모 병원, 항공사<sup>8)9)</sup> 등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 등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sup>10)11)</sup>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따

- 6) “행위자 등”이라 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범자에 대하여 “수범자” 또는 법문처럼 “행위자 등”으로 요약하여 칭하기로 한다.
- 7)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207 차별행위중지 사건. 이 사건에 있어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국내 모 항공사를 피고로 하여 위 항공사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1심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홈페이지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그 기간 내에 수정·보완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매일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9)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들이 별도의 손해배상은 받지 않고, 피고였던 모 항공사가 2014. 5. 31. 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orea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KWCAG 2.0)’에 따라 항공사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으로 1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http://berminor.com/news/view.html?smode=&skkey=%C0%A5%C1%A2%B1%D9%BC%BA&section=1&category=84&no=5943>(비마이너신문 2013. 10. 4. 자 인터넷신문기사) 참조.
- 10)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ba07&serial=76936&page=1> (법률신문 2013. 7. 25. 자 인터넷신문기사) 참조.
- 1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40520165746352907> (에이블뉴스 2014. 5. 21. 자 인터넷신문기사) 참조.

라 공공기관은 물론 각 민간 기업들이 고유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접근에서 차별 내지는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내지는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II.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 조항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내지는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 조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법 제2조).

다만,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병이나 기형 또는 이상증세가 장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장애의 개념을 상당히 좁게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장애로 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하고(적극적 요건), 어떠한 현상이 그러하지 않은지(소극적 요건)에 대한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sup>12)</sup>는 장애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만하다고 보인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

### 가. 차별의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4조 제1항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직접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간접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 나. 예외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

12)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 34호 上, 무지개출판사, 2011, 109면.

정 등이 있는 경우(법 제4조 제3항 제1호)나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4조 제4항)는 예외가 있다.

#### 다. 검토

위와 같은 원칙과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실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부가 문제될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먼저 문제된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 하겠지만, 예비적으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차별은 인정이 되지만, 그 예외를 인정하여 주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차별성을 부정”하겠다는 법문의 형식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직접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간접차별은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sup>13)</sup> 왜냐하면 직접차별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만, 간접차별은 장애인의 기본권이 객관적, 가치중립적인 기준에 의하여 침해되는 형태인데 객관적, 가치중립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모든 형태의 기준이 모두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이러한 점에서 향후에는 어느 정도가 과도한 부담인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인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차별성이

13) 이달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과 판단”, 『노동법논집』 제15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187면

14) 이달휴, 전거서, 187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들이 검토되고 축적되어 차별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 영역”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에서는 ① 고용(법 제10조 내지 제12조), ② 교육(법 제13, 14조),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법 제15조 내지 제25조), ④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법 제26, 27조), ⑤ 모·부성권, 성 등(제28, 29조), ⑥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법 제30 내지 제32조)의 차별금지 영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영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영역을 상정하여 포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입법자 역시 많은 고민 끝에 최대한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에서 규정된 각 금지된 차별 영역(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마다 차별의 내용과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차별금지영역별로 필요하다는 점이고, 따라서 각 차별 영역마다 구체적인 차별판단 여부를 제시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의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sup>15)16)</sup>

### 4.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

#### 가. 권리구제 일반

15) 같은 취지로,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124면.

16) 이러한 점은 후술하는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있어 차별 내지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법 제3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법 제39조) 및 권고(법 제4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의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법 제43조), 손해배상(법 제46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의 법원의 구제조치(법 제48조), 벌칙(법 제49, 5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46조 제2, 3항), 이러한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 등을 통해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의 피해자에게 입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전보배상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차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또 그러한 손해의 액수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당시 가해자가 패소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는 것보다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17)</sup>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우리법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전보배상의 법리를 전제로 하되, 손해액의 추정과 아래에서 언급하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17)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국제인권법」 제7호, 국제인권법학회, 2004, 75-76면.

되었다.

나아가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명확히 배분하고 있다(법 제47조). 이러한 입증책임을 분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증을 적절히 분배한 것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sup>18)</sup>

#### 다. 벌칙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고(법 제49조), 앞서 살펴 본 법무부장관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50조).

### Ⅲ.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1. 웹 접근성 보장의 의미와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웹 접근성의 정의에 대해 웹 접근성 표준을 주도하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s)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make the Web accessible to people with disabilities)”<sup>19)</sup>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가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

18) 같은 취지로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 25호 상, 무지개출판사, 2007, 178면 참조.

19) <http://www.w3.org/WAI>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sup>20)</sup>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웹 접근성 보장이란 누구나, 어떠한 여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서론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15. 4. 11.부터 적용되는 일부 예외 사업장 및 시설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고, 시각장애인인 교수가 모 원격교육연수원을 상대로 강의내용 중 일부가 교육교재로 대체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재가 점자나 파일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강의 내용을 마우스로 클릭해야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 제11조 위반을 주장한 사례<sup>21)22)</sup>가 있는 등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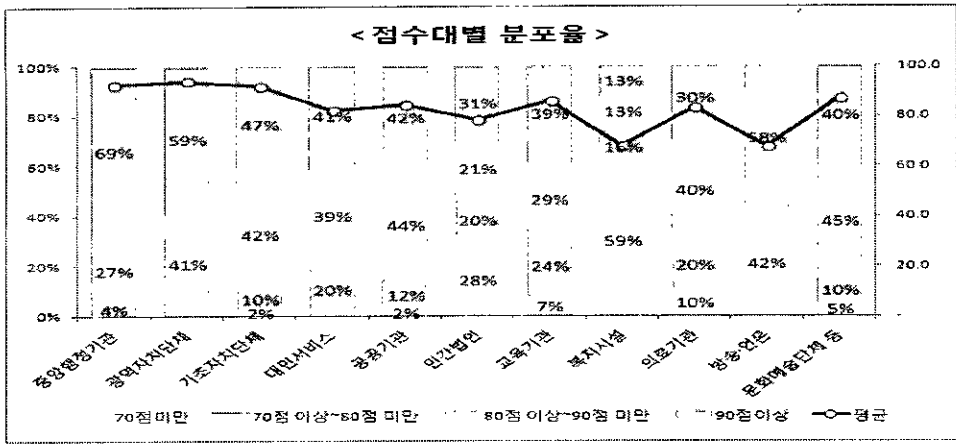
이러한 웹 접근성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도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인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2014. 4. 4.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2013년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sup>23)</sup>

20)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

21) 당시 시각장애인이 피진정인으로 삼은 모 원격교육연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2013. 4. 11.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그 실질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2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4집(2009-2011) 448-458면.

23) 미래창조과학부, 2014. 4. 4.자 보도자료, 4면.



[그림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2013년도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는 90점이 넘어 우수, 기초자치단체·대민서비스·공공기관·교육·의료기관·문화예술단체는 80점대로 보통, 민간법인은 70점대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의 접근성이 60점대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4)</sup>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기관의 웹 접근성 평가에 대해서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에 따른 전문가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웹 접근성의 가장 큰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반영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sup>25)26)</sup>

이하에서는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것이 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24) 미래창조과학부, 2014. 4. 4.자 보도자료, 1면.

25) 오정훈,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 17면.

26) 비록 이러한 비판은 2008년도에 진행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평가 역시 장애인들의 의견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의 법제와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외국의 웹 접근성 보장법제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검토

### 가. 미국

미국에서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해서는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508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별히 논란이 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sup>27)28)</sup>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이하, 'ADA'라 한다)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ADA가 (민간의) 웹사이트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판례의 법리는 웹사이트도 ADA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sup>29)</sup>

참고로, 미국의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ADA 위반이 문제된 사안 중 금전배상까지 포함한 소송이 청구된 대표적인 사례로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sup>30)</sup> 사건을 들고 있다.<sup>31)</sup> 그러나 위 Target 사건은 접근성 모니터링, 접근성 인증, 기금 조성을 전제로 한 화해로 종결되었기 때문에<sup>32)</sup> 어떠한 경우가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을 위반한 것인지, 웹 접근성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참고할만한

27) 박경신 외 4인,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법학』 제6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41면.

28) 박경신, “외국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실태 및 시사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 77면.

29) 박경신 외 4인, 전게서, 152-153면. 박경신 전게서 88면.

30)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oration, 452 F.Supp.2d 946 (2006).

31) 박경신 외 4인, 전게서, 147-153면 참조. 박경신 전게서 83-88면 참조.

32) 화해의 결과, USD6,000,000 기금을 마련하고, Target 측이 합리적 범위의 원고 측 소송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할 것이다.

## 나. 호주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이하, 'DDA'라 한다)은 주거, 교육, 재회 및 용역의 제공 등의 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sup>33)</sup> 호주의 경우 아래에서 언급하는 Maguire 사건<sup>34)</sup> 이후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의 접근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사업자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한 재회·용역의 제공시 DDA의 준수 필요성을 인식시키게 되었다.<sup>35)</sup> 2003년 호주 인권평등기회위원회는 W3C WCA 기준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자상거래, 새로운 정보기술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였다.<sup>36)</sup>

호주에서는 시드니올림픽 당시 시각장애인인 Maguire가 올림픽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갖추지 않아 호주의 DDA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인권평등기회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웹 접근성 미준수로 인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손해배상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sup>37)</sup>

당시 Maguire는 올림픽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어 호주의 DDA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올림픽위원회에 대하여 '① 웹 사이트의 모든 이미지 및 이미지 맵 링크에 대해 대체 텍스트 제공, ② 스케줄 페이지부터 스포츠 인덱스에 대한 접근, ③ 올림픽 기간 동안 웹 사이트의 경기 결과에 접근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sup>38)</sup>

33) 박경신 외 4인, 전계서, 153-154면, 박경신, 전계서 89면.

34) Bruce Lindsay Maguire v Sydney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No. H 99/115, 11 August 2000 (hearing), 24 August 2000 (decision).

35) 박경신 외 4인, 전계서, 154면, 박경신, 전계서 89면.

36) 박경신 외 4인, 전계서, 154면, 박경신, 전계서 89면.

37) 박경신 외 4인, 전계서, 153-157면 참조, 박경신, 전계서, 90-92면 참조.

38) <https://www.humanrights.gov.au/bruce-lindsay-maguire-v-sydney-organising-committee-olympic-games> 의 "1. THE COMPLAINT" 참조.

이에 대하여 인권평등기회위원회는 올림픽위원회는 “① Maguire가 맹인이라는 이유로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게 함으로써 DDA 제24조를 위반하였다. ② 올림픽위원회는 2000. 9. 15.까지 웹사이트에 접근 가능하도록 Maguire가 요구한 위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 또는 올림픽 기간 중에 올림픽위원회가 위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경우 Maguire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함이 분명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결정하였다.<sup>39)</sup>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로서 이후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sup>40)</sup>

그러나 앞서 호주 인권평등기회위원회는 위 사건에 있어 호주 DDA 제24조 위반을 선언함과 더불어 Maguire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결정만을 하였고, 다만 만약 올림픽위원회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올림픽이 시작되면 Maguire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곧바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 결정문을 보더라도 호주 올림픽위원회가 Maguire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Maguire가 호주 인권평등기회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도 없어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 다. 영국

영국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이하, 'DDA'라 한다)을 도입하여 고용(제2장), 재화와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및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제3장), 교육(제4장), 대중교통(제5장)에 있어서

39) <https://www.humanrights.gov.au/bruce-lindsay-maguire-v-sydney-organising-committee-olympic-games> 의 "4. DETERMINATION" 참조.

40) 박경신 외 4인, 전게서 157면, 박경신 전게서, 92면.

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sup>41)</sup> 법 제19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을 거절하는 것,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방식을 일반인과 달리하는 것, 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sup>42)43)</sup>

영국은 DDA상의 차별유형으로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의 거부를 규정함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이 문제가 되었으나, 이러한 분야에서도 DDA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W3C WCAG 1.0을 기준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2월 장애인 권리 위원회(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에서는 구체적인 지침(Code of Practice)<sup>44)</sup>도 제정하였다.<sup>45)</sup> 위 지침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중이고, 주요 골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발하라는 것이다.<sup>46)</sup>

이후 영국은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각종 차별금지법률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평등법을 개정하였는데, 2010. 10. 1.부터 단계적으로 단일법인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DDA 조항도 대부분 평등법으로 대체되었으며,<sup>47)</sup>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장애의 의미를 판단하는 폭도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48)</sup>

## 라. 검토

이상과 같은 외국의 웹 접근성 보장법제를 살펴보면, 비록 미국, 호주, 영국

41)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정책조명(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7-28면 참조.

42) 박경신 외 4인, 전게서, 157-158면, 박경신, 전게서, 93면.

43) 현준호·김석일, “국내 외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및 개선방안”, 『KADO 이슈리포트』 통권 31호, 2006, 12면.

44)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s Code of Practice

45) 박경신 외 4인, 전게서, 158면, 박경신, 전게서 93면.

46) 현준호·김석일, 전게서, 12면

47)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7>(함께걸음 2010. 9. 30.자 인터넷신문기사) 참조

48) 구미영, “영국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1, 84, 90면 참조



모두 문제되는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문제되는 사안에서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웹 접근성 보장과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 가.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금지 영역 중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금지(법 제20조 제1항)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법 제21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웹 접근성의 의미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웹 접근성 보장의 관련 규정(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 관련되는가, 제21조 제 1항에 관련되는가)

만약 장애인이 모 기업의 홈페이지를 접근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달리 접근하기 어려웠다면(즉,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

러한 상황이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위반인지 아니면, 제21조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 102207 차별행위중지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모 항공사의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웠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49) 제3항50)에서 규정한 시정조치 등의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된 “차별적 행위”를 전제로 한 시정조치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적 행위가 아닌)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보인다.

#### 다.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3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있을 뿐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장

49)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50)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웹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까지 하도록 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을 들어 행위자 등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 사이트를 구축할 의무까지 부여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 등에게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실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을 넓게 해석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편의 제공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가 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웹 접근성을 갖추었는지 유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이 아닌 동법 제21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1)</sup>

#### 4. 우리나라에서의 웹 접근성 준수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가. 문제점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에 따라, 장애인들이 웹 사이트에 접근함에 있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

51)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역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제공의무 부담 시점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규정은 일반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까지 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가 동법 제17조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법 제21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에 관한 회신(안건번호 09-0215)”, 2009. 7. 20.자 회신 참조

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보장'하여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위와 같은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되는지 여부가 궁극적으로는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여야만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제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나.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존재로 인한 혼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참고할만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앞서 언급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207 차별행위중지 사건에서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소장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마련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정권한을 위임하였다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한 지침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그와 같은 권한을 준 바가 없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은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필요한 수단의 내용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지침에 따라 웹 사이트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재위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웹 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소장에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가이드라인은 2009. 3.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04. 12.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제정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1.0,<sup>52)</sup> 2009. 12. 22.자로 제정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sup>53)</sup> 2013. 12. 18.자로 제정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sup>54)</sup> 한국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포럼 산하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가 2005. 12. 제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명확한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수범자들은 과연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혼란스러운 점은 심지어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도 실제 장애인의 사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웹 접근성 지침만 준수하면 웹 접근성 준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론까지도 존재한다는 점이다.<sup>55)</sup>

그렇다면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범자들은 각종 가이드라인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설령 그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 접근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장애인 사용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문제되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각종 형사·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말로 법이 그 자체로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범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52) KWCAG 1.0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World web Consortium)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서 1999년 5월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1.0)과 2003년 6월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CAG 2.0) 및 미국재활법 제508조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53)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pk\\_num=TTAK.OT-10.0003%2FR1](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pk_num=TTAK.OT-10.0003%2FR1)

54)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pk\\_num=TTAK.OT-10.0003%2FR2](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rn=1&pk_num=TTAK.OT-10.0003%2FR2) 참조

55) 이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정훈, 전계서, 17면, 김석일 "장애인 웹 사용성 향상을 위한 제안과 그 타당성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 54면 참조.

기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 다. 검토

결국 이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현재와 같은 “웹 접근성에 관한 정의” 규정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위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207 차별증지사건과 유사하게 장애인들이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상대로 웹 접근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법원으로는 과연 웹 접근성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검토도 용이하지 않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시정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법원 스스로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웹 접근성을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sup>56)</sup>

이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내용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화기본법상으로도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2013. 5. 22.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

56) 앞서 언급한 비마이너신문 2013. 10. 4.자 인터넷기사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207 차별증지사건의 조정 결과를 두고 “이번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충족 여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평가라 할 것이다. 당시 원고들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피고였던 모항공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였던 것일 뿐, 당시 재판부가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국가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sup>57)</sup>

위와 같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이후, 2014. 1. 24.자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로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 주식회사 웹와치, 사단법인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 행복한 웹 앤 미디어의 4개 기관이 국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sup>58)</sup>

비록 국가공인인증기관의 활동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기존과 달리 웹 접근성 인증 평가기관이 국가 공인 기관으로 단일화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로는 심사기관의 명확화와 더불어 웹 접근성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 역시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여야만 웹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수범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지는 동법 시행령 상에 웹 접근성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는 경우<sup>59)</sup>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각종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장 수범자인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기관 등의 종사자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09년 설문조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구제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차별

57) 기존에는 정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장애인 전문단체 7곳이 각종 기관·기업 웹 사이트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발급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별도 법적 근거가 없고,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가 웹 접근성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18447.html>(한겨레신문 2014. 1. 5.자 인터넷기사) 참조.

58) 즉, 국가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는 경우 국가정보화기본법상으로 요구되는 웹 접근성을 갖추었다는 인정이 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59) 물론 이러한 인증은 1회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37.5%)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의 징역 또는 벌금 판결(33.3%),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12.5%), 법무부장관의 과태료부과(12.5%),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4.2%)순으로 응답되었다.<sup>60)</sup>

이렇듯 장애인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가장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서도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만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구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IV. 결론

정보화시대인 현재는 일상생활에 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로서 규제되어야 하는 것도 지극히 합목적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웹 접근성의 정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장애인들에 대한 웹 접근성이 준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못하였을 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론 각종 형사·행정적인 제재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 및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웹 접근성이라는 것도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수범자들로 하

60) 우주형 외 2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 연구 09-16-13」, 한국법제연구원, 2009, 153, 171면.



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웹 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손해배상이 가장 실효성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로 웹 접근성 준수 여부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정”이 아닌 “판결”로 판단하려 할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웹 접근성 위반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및 시정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웹 접근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상의 품질인증제도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그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만이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요구되는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거나,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더욱 용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4집(2009-2011).  
미래창조과학부, 2014. 4. 4.자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에 관한 회신(안건번호 09-0215).  
구미영, “영국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김석일 “장애인 웹 사용성 향상을 위한 제안과 그 타당성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박경신 외 4인,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법학」 제6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박경신, “외국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실태 및 시사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국제인권법」 제7호, 국제인권법학회, 2004.
-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정책조명(국제사회 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오정훈, “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공청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9.
- 우주형 외 2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09-16-13」,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이달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과 판단”, 「노동법논집」 제15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안암법학」 34호 上, 무지개출판사, 2011.
- 이준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한 대안의 제시”, 「안암법학」 25호 上, 무지개출판사, 2007.
- 현준호·김석일, “국내 외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실태 및 개선방안”, 「KADO 이슈리포트」 통권 31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Abstract]

STUDY ON NEEDS FOR FORMUL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STANDARDS IN COMPLIANCE WITH  
WEB ACCESSIBILITY REQUIREMENT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AND  
STATUTORY LIABILITIES THEREFROM

Jang, Hye-Ji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Since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was enacted, statutory liabilities from and meaning of web accessibility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have attracted growing attention in Korea as shown in lawsuits for damages and rectifications against hospitals and airlines as such on the grounds that such parties have not provided enough web accessibility requi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it is not clear to sa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have the definitive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such parties have provided enough web accessibility requi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withstanding various standards (guidelines) set out in different institutions and groups, the loophole i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related to definitive standard gives more rise to a confusion in choice of and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It is important to formulate the definitive standard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in the Discrimin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o secure the right to access web sit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information-

oriented era as well a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pplying various guidelines produced by different institutions and groups and by different situations is unpredictable and creates more confusion.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hoosing the right standards. The parties who operate web site have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mpliance with the non-definitive standards because they are required to provide web accessibil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ny failure in providing web accessibility causes statutory liabilities and criminal/regulatory sanctions.

The formulation of the definitive standard will eliminate any difficulties in choosing standard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arties to operate web site and provide its accessibility. We expect that the formulation of the definitive standard will gu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ake more easy to seek for damages or rectifications from the failure of the party providing web accessibility so as to contribute the more solid protec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Disabilit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Web Accessibility,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The Remedy(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and Statutory Liabilities

#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최근 동향과 국내 손해배상 입법 대응\* \*\*

Recent Trends of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and Domestic Legislative Response

조인성\*\*\*  
Cho, In-Sung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에 따른 국내법적 대응조치
- III. 맺는 말

## 국문초록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 규범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추가의정서의 입법은 손해배상제도를 중점으로 사후규제에 해당한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 법률로써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동법은 이 추가의

논문접수일 : 2014.07.01

심사완료일 : 2014.08.04

게재확정일 : 2014.08.05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고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유럽헌법학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2014년 3월 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책임과 구제에 관한 아시아 법제 통합방안 -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최근 동향과 국내 입법 대응을 중심으로 -"를 수정·보완하여 기고한 글이다.

\*\*\* 법학박사·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